

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

의 번 호	154
---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5.
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사유

- 보건(지)소에서 치아우식증(충치) 예방을 위해 열구전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
이에 따른 진료비 산정근거를 마련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열구전색진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
진료수가 기준액중 보건(지)소 치과 1회 방문당수가 충전료비로 정하여 환자
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

3. 개정근거

- 충북도 보건 65310 - 269 (1995. 2. 13) 호

4. 불임

- 가. 개정조례안 1부
- 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- 다. 관련공문 1부

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증 "별도 정하여"를 "별표1에 의거"로 한다.

제7조제1항증 "별표"를 "별표2"로 한다.

(별표)을 (별표2)로 하고, (별표1)을 별지와 같이한다

부 록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험	개 정 안
<p>제 6조 (기타수가)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처, 보철 등에 소용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제 7조 (증명발급 수수료) ① 각종증명발급 수수료는 <u>별표</u>에 의거 징수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 6조 (기타수가)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</p> <p>별표1에 의거—————.</p> <p>제 7조 (증명발급 수수료) ①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<u>별표2</u>—————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기 타 수 가

구 분	진 료 수 가	비 고
연구전식 진료비	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보건(지)소 치과1회 방문 당수가 충진료비를 환자로부터 징수한다.	

(별표 2)

제증명발급수수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수 수 료	비 고
1. 근로자 건강진단서	1 통	500	
2. 공무원 체육신검사서	1 통	500	
3. 일반진단서	1 통	500	
4. 특별진단서	1 통	2,000	요양신청용 별사용 상해진단용
5. 사체검안서	1 통	5,000	
6. 성별 및 연령감정서	1 통	2,000	
7.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	1 통	2,000	x 선, 감염검사 포함
8. 사망진단서	1 통	500	
9. 출생,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	1 통	500	
10.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	1 통	300	
11. 1통 초과 발급	1 통	100	